

## 헌덕왕대 太子妃 貞嬌와 태자

A Study on wife of Crown prince JeongGyo and her husband

---

저자 (Authors)	홍승우 Hong, Sueng-woo
출처 (Source)	<a href="#">신라문화 51</a> , 2018.2, 171-196 (26 pages) <a href="#">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SILLA CULTURE 51</a> , 2018.2, 171-196 (26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a>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09684">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09684</a>
APA Style	홍승우 (2018). 헌덕왕대 太子妃 貞嬌와 태자. 신라문화, 51, 171-19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11 10:44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헌덕왕대 太子妃 貞嬌와 태자

홍승우\*

<目 次>

- |                    |                             |
|--------------------|-----------------------------|
| I. 머리말             | III. 문헌에 기재된 왕모의 의미와 태자비 정교 |
| II. 忠恭의 딸과 그 혼인 상대 | IV. 맺음말                     |

**【국문초록】** 822년 정월에 흥덕왕은 부군이 되어 월지궁에 들어간다. 부군은 왕위계승권자인 태자와 동일한 지위와 신분이라 여겨지지만, 같은 해 3월에 태자비가 된 정교가 흥덕왕과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군의 실체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부군과 그 거처인 월지궁의 실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정교와 결혼한 태자가 누구 인지를 검토하였다. 822년 정교와 결혼한 것은 김균정으로 추정된다. 그는 충공의 딸과 결혼했으며, 그의 부인 중 하나의 이름이 정교이기 때문이다. 다만 김균정의 부인 정교는 신무왕의 어머니로 되어 있는데, 정교가 태자와 혼인한 해에 이미 신무왕은 장성한 상태였기에, 그녀가 신무왕의 생모가 될 수는 없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실린 왕의 모친에 대한 기록들은 생모를 적은 것이 아니라,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보상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교가 신무왕의 친모는 아니지만, 민에왕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신무왕이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부친의 재취이자 자신의 의모가 되는 정교부인을 자신의 공식적인 어머니로 내세웠다고 추정된다.

다만 태자가 아닌 균정의 부인 정교를 태자비로 적은 것은 후대의 관념이 반영된 것이다. 신무왕과 그 후계자라 할 수 있는 문성왕, 현안왕까지 균정의 직계가 왕위에 오르면서, 균정을 정당한 왕위계승권자로 분식하여 태자의 지위에 올랐던 것처럼 만들었고, 그 결과 균정이 정교와 혼인한 사실이 마치 그녀가 태자비가 된 것처럼 기록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결국 헌덕왕대의 태자비 정교의 혼인은 그 당시 왕위계승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를 통해 헌덕왕대 부군이 태자와 다른 지위 내지는 신분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흥덕왕이 된 부군은 태자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지위이자 신분이라 할 수 있으며, 흥덕왕이 부군이 되어 들어가 살게 된 월지궁은 태자의 거처인 동궁이 될 수밖에 없다.

\* 명지대 객원교수

**[영문초록]** ]In January of 822, King HeungDeok became a Bugun and moved into the Wolji-Gung. Bugun is the same position with Crown prince. But in March of the same year, Daughter of ChungGong named JeongGyo became Taejabi which means wife of Crown prince, and her husband was not King HeungDeok. So still the true identity of Bugun is not clear.

In order to confirm that Bugun is the official position of royal successor in Silla Dynasty, I researched about the husband of JeongGyo. And I conclude that Kim GyunJeong is most likely candidate. That's because it is written on records that he married with one of ChungGong's daughter and one of his wife's name was JeongGyo.

But two questions remains. One is that JeongGyo can not be the birth mother of King SinMu who was the son of Kim GyunJeong's wife named JeongGyo. But that is not critical issue. Because the king's mother written on SamgukSaki and SamgukYusa were not birth mother but genealogical mother.

The other is Kim GyunJeong was not Crown prince when he married JeongGyo in 822. It can be explained that King SinMu, King MunSeong and King HeonAn who were the descendant of GyunJeong, made up the records as if GyunJeong was a legitimate royal successor.

In conclusion, the husband of JeongGyo was not actual Crown prince, and it is clear that Bugun is official position and title of royal successor during the reign of King HeonDeok.

**[주제어]** 부군(Bugun), 태자비(wife of Crown prince), 정교(JeongGyo), 김균정(Kim GyunJeong), 왕모(king's mother)

## I . 머리말

興德王은 822년(헌덕왕 14) 정월에 副君이 되어 月池宮에 들어갔다.<sup>1)</sup> 당시 憲德王에게는 왕위를 이을 아들[嗣子]이 없어 동생 흥덕왕을 부군으로 삼았던 것이다. 『三國史記』 新羅本紀(이하 신라본기)와 祿眞傳에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sup>2)</sup> 두 기사에 흥덕왕이 각각 副君과 儲貳·儲君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부군과 저이·저군은 모두 왕위계승권자인 太子의 이칭들이어서, 일반적으로 이때 흥덕왕이 태자의 지위에 올랐다고 보고 있으며,<sup>3)</sup> 그가 들어가 거주한 月池宮이 太子가 거처하는 東宮의 정식 이름 혹

1)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憲德王 14年 正月條, “以母弟秀宗爲副君 入月池宮[秀宗或云秀升]”

2) 『三國史記』 卷45, 列傳5 祿眞傳, “十四年 國王無嗣子 以母弟秀宗爲儲貳 入月池宮 (중략) 寡人爲君 卿爲相 而有人直言如此 何喜如焉 不可使儲君不知 宜往月池宮 儲君聞之 入賀曰 嘗聞君明則臣直 此亦國家之美事也”

3) 『三國史節要』 卷13, 壬寅 憲德王 14年條에서는 신라본기와 녹진전의 기사를 결합하여

은 이칭으로 파악되고 있다.<sup>4)</sup>

그런데 일찍부터 흥덕왕이 된 부군이냐 저이가 태자와 동일한 신분 내지는 지위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었다.<sup>5)</sup> 그리고 나아가 부군이 된 후의 거처인 월지궁이 태자궁, 곧 동궁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기에 이른다.<sup>6)</sup> 일반적으로 동궁은 태자의 거처이자 공적 활동의 공간이다. 하지만 동궁이라는 이름은 방위상 동쪽에 있는 궁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기록들에서 신라 동궁은, 왕이 추최하는 연회가 여러 차례 베풀어지는 등 태자의 거처로 보기 힘든 정황이 확인된다. 따라서 신라 동궁이 태자의 거처가 아니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는데,<sup>7)</sup>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부군이 태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일견 여러 기록들에 나오는 부군, 저이, 저군은 태자의 이칭이며, 그의 거처인 월지궁이 태자궁인 동궁임이 분명해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헌덕왕대 부군과 별도로 태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흥덕왕이 부군이 된 두 달 뒤에 忠恭의 딸 貞嬌를 맞아들여 太子妃로 삼았다는 기록에서 비롯된다.<sup>8)</sup> 부군이 왕위계승권자인 태자의 이칭이라면 이 정교가 곧 흥덕왕의 부인이어야 하지만,<sup>9)</sup> 흥덕왕비는 章和夫人으로 전하고 있다. 정교가 흥덕왕의 부인이 아니라면 별도의 태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군과 별개로 태자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sup>10)</sup>

---

기술하였는데, 부군을 태자로 고쳐 적었다. 또 다수의 연구자들이 부군을 태자의 이칭이거나 그에 준하는 지위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연구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p.122 ; 木村誠, 「新羅の宰相制度」, 『人文學報』 118, 1977, p.36 ; 崔在錫, 『韓國古代社會史研究』, 一志社, 1987, p.182 ; 金昌謙, 「新羅時代 太子制度의 性格」, 『韓國上古史學報』 13, 1993, p.166 ; 이승현, 「新羅의 東宮制度」, 『韓國古代史研究』 55, 2009, p.232 ; 윤경진, 2015 「신라 흥덕왕대 체제정비와 김유신 추봉-삼한일통의식 출현의 일배경-」, 『史林』 52, p.113 ; 손홍호, 「9세기 전반 신라의 정치동향과 충공의 역할」, 『韓國古代史研究』 83, 2016, pp.309~313.
- 4)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편, 『慶州 東宮과 月池Ⅱ 발굴조사보고서』, 2014, pp.29~31.
- 5) 井上秀雄, 『新羅史の基礎研究』, 1974, 東出版, p.433 ; 曹凡煥, 「新羅 下代 憲德王의 副君 설치와 그 정치적 의미」, 『震檀學報』 110, 2010, pp.35~36 ; 김병곤, 「신라 헌덕왕대의 副君 秀宗의 정체성과 太子」, 『東國史學』 55, 2013, pp.185~192 ; 선석열, 「신라 헌덕왕대의 정치과정과 정교부인의 혼인 문제」, 『新羅文化』 48, 2016, p.176.
- 6) 김병곤, 「雁鴨池의 月池 改名에 대한 再考」, 『역사민속학』 43, 2013 ; 김병곤, 「신라 東宮의 역할과 영역-임해전 및 안압지와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探究』 20, 2015.
- 7) 신라 동궁에 대한 그간의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홍승우, 「문헌으로 본 新羅의 東宮과 그 운영」, 『문헌으로 보는 신라의 왕경과 월성』,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7 및 전덕재, 2017 「신라 東宮의 변화와 臨海殿의 성격」, 『사학연구』 127을 참조할 것.
- 8)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 10 憲德王 14年 3月條, “聘角干忠恭之女貞嬌爲太子妃”
- 9) 李基白, 앞의 책, 1974, p.122 ; 윤경진, 앞의 논문, 2015, p.113 ; 손홍호, 앞의 논문, 2016, pp.313~314.
- 10) 李基東, 「新羅 興德王代의 政治와 社會」, 『國史館論叢』 21, 1991, pp.115~116 ; 金昌謙, 앞의 논문, 1993, p.167, 각주 52 ; 조범환, 앞의 논문, 2010, p.35 ; 김병곤, 앞의 논문,

하지만 흥덕왕이 부군이 되었을 당시 헌덕왕에게 별도의 태자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흥덕왕이 된 부군은 왕위계승권자의 지위임이 분명하고,<sup>11)</sup> 헌덕왕에게 설사 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흥덕왕의 왕위계승이 평화리에 이루어졌던 것을 볼 때, 당시 흥덕왕이 헌덕왕의 아들과 왕위를 두고 경쟁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sup>12)</sup> 그러나 태자비 정교가 혼인한 상대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부군의 정체성에 의문이 남아 있고, 월지궁의 성격 역시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 헌덕왕대 부군과 월지궁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태자비 정교와 혼인한 태자가 누구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관련 기록들이 단편적이고 또 서로 모순된다는 사료상의 한계 때문이다. 하지만 이 주제가 헌덕왕대 부군의 성격에 대한 논쟁과 서로 결합하여 있어, 정교 자체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존 연구들에서 태자비 정교가 혼인한 상대가 누구인지는 크게 흥덕왕으로 보는 측과 헌덕왕의 아들로 보는 주장으로 양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sup>13)</sup> 이는 정교나 그의 혼인 자체를 고찰하기보다 부군이 태자인가 아닌가를 근거로 그 혼인상대를 추정하였던 결과였다. 따라서 여러 기록상의 불일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sup>14)</sup>

본고에서는 헌덕왕대 부군과 월지궁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헌덕왕대 태자비 정교의 실체를 밝히고자 한다. 정교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부군이 태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흥덕왕의 정치적 위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교의 혼인

2013, p.186 ; 선석열, 앞의 논문, 2016, p.176.

11) 홍승우, 「신라 副君과 月池宮」 『東洋學』 70, 2018, pp.72~77.

12) 李基東, 앞의 논문, 1991, p.116 ; 손흥호, 앞의 논문, 2016, pp.309~318.

녹진전에 의하면 흥덕왕이 부군이 된 것은 헌덕왕에게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어서였다고 한다. 헌덕왕에게 아들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들의 존재가 곧 별도의 태자가 존재했음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가장 확실한 헌덕왕의 아들로 지목되는 것이 승려心地인데, 그는 15세 이전에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고 한다(『三國遺事』 卷4, 義解心地繼祖, “釋心地 辰韓第四十一主憲德大王金氏之子也 生而孝悌天性冲睿 志學之年落采從師 拳勲于道”). 이처럼 출가하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나 혹은 신분상의 문제로 인해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태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李泳鎬, 「통일신라시대의 王과 王妃」 『新羅史學報』 22, 2011, p.51 ; 김창겸, 「신라 승려心地 연구-『삼국유사』 「心地繼祖」와 관련하여-」 『신라문화재학술발표논문집(신라 왕경유적과 고승이야기)』 『삼국유사』 「의해」 편Ⅱ) 34, 2013, pp.215~218). 녹진전의 표현도 그냥 아들이 없었다가 아니라 왕위를 이을 아들[嗣子]가 없었다는 것이다.

13) 그 외에 헌덕왕으로 보는 입장(文暲鉉, 「神武王의 登極과 金昕」 『西巖趙恒來教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1992, pp.71~72), 혼인 기사 자체가 오류라고 보는 견해 등이 있다(李基東,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p.158).

14) 최근에 선석열은 정교의 혼인 문제를 면밀히 고찰하여 태자비 정교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 바 있다(선석열, 앞의 논문, 2016). 하지만 이 역시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문제에 접근했던 기존 연구들과 달리, 본고에서는 문헌에 나오는 충공의 딸과 사위에 대한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교가 누구인지를 추정할 단서를 찾고자 한다. 나아가 문헌에 나오는 왕모와 왕비에 대한 기록들의 특징을 분석하여 태자비 정교의 실체에 접근하는 시도를 해보겠다.

## II. 忠恭의 딸과 그 혼인 상대

정교는 忠恭의 딸이다. 충공은 元聖王의 장남 惠忠太子, 곧 仁謙의 아들로, 昭聖王·憲德王·興德王의 동생이며 閔哀王 金明의 아버지이다.<sup>15)</sup> 그는 808년(애장왕 9)에 형인 헌덕왕과 함께 당으로부터 門戟을 하사받은 것을 보아, 애장왕 재위시부터 형들과 함께 정치를 주도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헌덕왕의 왕위 탈취에 협력하여 그 정치적 위상이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그 관력이 자세히 전하지는 않는다. 그의 직위가 확인되는 것은 817년(헌덕왕 9) 1월의 시중 임명이 처음이다. 이후 821년(헌덕왕 13) 시중직에서 물러났지만,<sup>16)</sup> 형인 흥덕왕이 부군이 되면서 물러난 상대등을 맡으면서 정치권력의 핵심에 자리 잡았다. 이후 말년의 행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鳳巖寺 智證大師寂照塔碑文」에 宣康太子라 기술된 것을 보아 흥덕왕대 왕위계승권자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아들 민애왕이 즉위한 후 宣康大王으로 추봉되었다.

그런데 충공은 그 자신이 정치를 주도하던 실세이기도 했지만, 그의 딸들이 당시 여러 주요한 인사들과 혼인했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애장왕~흥덕왕대 형들과 함께 정치를 주도하던 실세이자 여러 유력 권력자들의 장인으로서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인물이었던 것이다. 이에 그가 딸들을 유력한 진골귀족들과 혼인시키면서 정치세력을 공고히 한 인물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sup>17)</sup>

현재 문헌에서 확인되는 충공의 딸은 정교 이외에 僖康王의 비인 文穆夫人 김씨와 憲安王의 어머니이자 金均貞의 처인 照明夫人(昕明夫人) 김씨가 있다. 희강왕은 원성왕 3남 禮英의 장남 憲貞의 아들이며, 均貞은 헌정의 동생으로 모두 당시에 핵심적인 진골 귀족들이었다. 그 외에 『삼국유사』 왕력에는 헌덕왕의 비도 충공의 딸 貴勝娘이라 되어있어서, 헌덕왕도 충공의 딸과 결혼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흥덕왕도 정교와 혼인한 상대일 수 있다.

15) 충공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손흥호, 앞의 논문, 2016, pp.302~303 참조.

16) 신라본기에는 이때 충공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퇴임을 사망으로 잘못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이병도 역주, 『삼국사기(상)』, 을유문화사, 1996, p.262의 각주 19).

17) 손흥호, 앞의 논문, 2016, pp.323~325.

이제 822년의 태자비 정교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 먼저 그간 알려진 충공의 사위들과 충공의 딸과 결혼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 및 그 부인을 검토해 보겠다. 우선 논의의 편의를 위해 충공의 딸과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거나 결혼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의 부인과 관련한 기록들을 모아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18)</sup>

<A(憲德王)>

- ① 妃는 貴勝夫人으로 禮英 角干의 딸이다. … 처 貞氏를 왕비로 삼았다.[신라본기 즉위(809)조]
- ② 妃는 貴勝娘으로 諡號는 皇娥王后이며, 忠恭 角干의 딸이다.[왕력 헌덕왕]
- ③ 彦昇의 처 貞氏를 (王)妃로 책립하였다.[구신라전·신신라전, 元和 7년(헌덕왕 4, 812)조]
- ④ 彦昇의 처 朴氏에게 책명을 내려 妃로 삼았다.[당회요 元和 7년조]
- ⑤ 처 真氏를 책립하여 妃로 삼았다.[책부원귀 元和 7년 7월조]

<B(興德王)>

- ① 12월에 妃 章和夫人이 죽어 定穆王后로 추봉하였다. 왕이 (왕비) 생각하기를 잊을 수 없어, 매우 슬퍼하며 즐거워 할 수 없었다. 여러 신하들이 표를 올려 다시 비를 맞아들일 것을 청하였으나, 왕이 말하기를 “혼자 남은 새도 짝을 잃은 슬픔이 있는데, 하물며 좋은 배필을 잃은 나는 어떠하겠는가. 어찌 정이 없게 바로 다시 아내를 얻겠는가” 하고, 끝내 따르지 않았다. 또 여자 시종을 가까이하지 않고, 좌우에 두고 부리는 사람은 오직 환관으로만 하였다.<장화의 성은 김씨로 昭聖王의 딸이다.>[신라본기 즉위(826)조]
- ② 妃는 昌花夫人으로 諡號를 定穆王后라 하고 昭聖의 딸이다.[왕력]
- ③ 母 朴氏를 大妃로 하고, 처 朴氏를 妃로 하였다.[신라본기 2년(827) 정월조]
- ④ 景徽의 母 朴氏를 太妃로 하고, 처 朴氏를 妃로 하였다.[구신라전 太和 5년(831)조]
- ⑤ 다시 그 母 朴氏를 봉하여 新羅太妃로 하고, 처 真氏를 王妃로 하였다.[책부원귀 太和 5년 4월조]
- ⑥ 겨울 12월에 왕께서 돌아가셨다. 諡號를 興德으로 하고, 신하들이 그 유언에 따라 章和王妃의 능에 합장하였다.[신라본기 11년(836)조]

<C(僖康王)>

- ① 妃는 文穆夫人으로 葛文王 忠恭의 딸이다.[신라본기 즉위(836)조]

18) 아래 인용문들의 출전에 대한 약칭은 다음과 같다. 『三國史記』 新羅本紀=신라본기, 『三國遺事』 卷1 王曆=왕력, 『舊唐書』 卷199上 列傳149上 東夷 新羅傳=구신라전, 『新唐書』 卷220 列傳145 東夷 新羅傳=신신라전, 『唐會要』 卷95 新羅=당회요, 『冊府元龜』 卷965 外臣部 封冊3=책부원귀. 또 원전에 注雙行으로 기재된 부분은 < >으로 표시하였다.

- ② 妃는 文穆王后로 忠孝 角干의 딸이다. (충효 각간은 重恭 角干이라고도 한다.[왕력]

<D(金均貞)>

- ① (憲安王은) 神武王의 이복동생[異母弟]이다. 母는 照明夫人으로 宣康王의 딸이다.[신라본기 헌안왕 즉위(857)조]
- ② (헌안왕은) 神武王의 弟로 母는 旻明夫人이다.[왕력 헌안왕]
- ③ (神武王은) 母 朴氏 眞嬌夫人을 憲穆大后로 하였다.[신라본기 신무왕 즉위(839)조]
- ④ (신무왕은) 金氏이고 이름은 佑△(徵)이다. 아버지 均具(貞) 角干을 成德大王으로 追封하였다. 어머니는 貞△夫人이다.[왕력 신무왕]

먼저 충공의 딸과 혼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중 헌덕왕을 살펴보자. <A-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헌덕왕비 貴勝夫人은 헌덕왕의 숙부인 원성왕 삼남 禮英의 딸로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왕력에 貴勝娘이 皇娥王后라는 시호를 받은 충공의 딸로 나와 (<A-②>), 그 부친에 대해 다른 전승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812년(헌덕왕 4)에 헌덕왕이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는데,<sup>19)</sup> 이때 그의 처가 함께 왕비로 책봉 받는다. 그런데 중국측 문헌에서 그녀를 貞氏(<A-③>) 혹은 真氏(<A-⑤>)라 적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貞과 真(眞)은 자형이 유사하여, 오사 혹은 오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헌에 따라 다르게 적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헌덕왕비를 정씨라 한 기록과 헌덕왕비 귀승부인이 충공의 딸이라는 왕력의 내용을 결합하고 태자비라는 표현이 오류라면, 헌덕왕의 처 貞氏는 정교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그리 크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우선 당의 책봉 기사들에 실려 있는 왕모나 왕비의 성씨에 오류가 적지 않다.<sup>20)</sup> 또 <A-④>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헌덕왕비가 朴氏라고 적시된 사료도 있어서, 일단 貞氏의 사실 여부부터 의문이 든다. 그리고 설사 貞氏가 맞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교와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다.

비슷한 시기 당에서 왕모나 왕비의 성을 그 아버지의 성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대부분 왕비 아버지 이름의 첫 글자를 성으로 삼거나,<sup>21)</sup> 박씨로 기재하였다.<sup>22)</sup> 즉 부인

19) 헌덕왕의 신라왕 책봉 시점은 신라본기에는 헌덕왕 원년으로 되어 있지만, 구신라전과 신신라전, 당회요, 『資治通鑑』 등의 중국측 사료들에서는 모두 812년(헌덕왕 4)으로 되어 있다. 이 기년의 차이가 나타난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는 이문기, 『신라 하대 정치와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2015, pp.88~95를 참조할 것.

2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권덕영, 「신라 하대 朴氏勢力的 동향과 ‘朴氏 王家」 『韓國古代史研究』49, 2008, pp.203~205 및 李泳鎬, 앞의 논문, 2011, pp.39~46를 참조할 것.

21) 소성왕의 조모 淑貞夫人은 角干 神述의 딸로 김씨이지만(『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元聖王 卽位條), 당의 책봉서에 부친의 이름 첫글자와 같은 발음인 申氏로 되어있고(위의 책, 哀莊王 9年 2月條), 소성왕의 처이자 애장왕의 모인 桂花夫人도 대아찬 叔明의

의 이름 첫 글자를 성으로 적은 사례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헌덕왕은 태자의 지위에 있었던 적이 없다.<sup>23)</sup> 또한 혼인 시점이 즉위한 이후여서 정교가 태자비로 분식될 여지도 없다. 그렇다면 헌덕왕과의 혼인이 태자비가 되는 것으로 기재될 이유가 전혀 없다. 결국 헌덕왕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와는 무관하게, 즉 헌덕왕비가 왕력과 같이 충공의 딸이라고 하더라도, 헌덕왕이 태자비라 하는 정교와 혼인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정교의 혼인 상대에서 헌덕왕은 배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교의 혼인기사 직전에 부군에 임명된 흥덕왕에 대해 검토해보자. 그는 부군이라는 지위에 있었고, 그것이 태자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그가 부군에 임명된 두 달 뒤에 바로 혼인기사가 나오니 만큼, 그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827년 혹은 831년에 있었던<sup>24)</sup> 당의 책봉서에 흥덕왕비가 真氏로 기록된 것이 있어 (<B-⑤>), 그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감이 있다.<sup>25)</sup>

하지만 흥덕왕비인 장화부인이 826년(흥덕왕 1) 12월 사망했고(<B-①>), 흥덕왕은 그녀를 매우 사랑해 이후 재혼하기는커녕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으며, 죽은 이후에도 왕후와 합장되었다(<B-⑥>). 그리고 장화부인은 일관되게 소성왕의 딸이라 나온다. 822년 정교와 혼인한 직후 바로 그녀가 사망하고 장화부인과 재혼한 것이 아니라면, 흥덕왕과 장화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신라본기에 인용된 당의 책봉 내용과 그 원전으로 보이는 『舊唐書』를 포함한 대부분의 중국측 자

딸로 金氏이나(위의 책, 昭聖王 卽位條), 숙씨로 책봉서에 나온다(위의 책, 哀莊王 6年 正月條). 한편 애장왕모 계화부인이 和氏로 기재된 것도 있는데(『冊府元龜』 卷965, 外臣部 封冊3 貞元21年), 이는 叔의 오기인 것 같다.

- 22) 애장왕비 박씨(『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哀莊王 6年條), 흥덕왕모 박씨(위의 책, 興德王 2年 正月條), 문성왕비 박씨(위의 책, 卷11 新羅本紀11 文聖王 3年 7月條)가 있다. 이외에 효성왕비 박씨(위의 책, 卷9 新羅本紀9 孝成王 2年 2月條)도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있지만, 효성왕에게 실제 박씨 왕비가 있었을 수도 있기에 잘못 기재된 사례에서 일단 제외한다.
- 23) 810년(헌덕왕 2) 당에 애장왕 명의로 파견한 사신이 돌아오면서 왕모와 副王, 宰相 등에게 하사하는 물품을 가지고 왔다. 이때 물품을 하사받는 부왕은 헌덕왕으로 보이는데, 당시 헌덕왕은 이미 즉위한 상황이었지만, 당에 애장왕 시해 사실을 숨기고, 자신을 부왕으로 하였다고 보인다(이문기, 앞의 책, 2015. p.87) 이 부왕이 부군과 같은 이름이라면 헌덕왕이 자신을 태자의 지위에 두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에 알리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때도 헌덕왕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태자와 같은 지위에 있었던 적은 없다고 할 수 있다.
- 24) 신라본기에는 827년(흥덕왕 2) 정월에 당의 책봉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지만, 『舊唐書』, 『新唐書』, 『唐會要』, 『資治通鑑』, 『冊府元龜』 등의 중국측 자료에서는 모두 831년(흥덕왕 6)의 일로 기록되어 있다.
- 25)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자료들에서 貞과 真是 상호 오류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이 두 글자를 차이로 보기는 어렵다.

료에는 흥덕왕비가 박씨로 기재되어 있어, 흥덕왕비를 진씨로 적은 것은 해당 자료인 『책부원귀』의 오류로 생각된다. 또 앞서 언급한 헌덕왕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름의 첫 글자를 성으로 사용한 예가 없는 것이 흥덕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충공의 딸 정교가 흥덕왕과 결혼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文穆王后과 혼인한 희강왕이 있다. 희강왕은 이름이 愍隆이며, 원성왕 3남 禮英의 장남 憲貞의 아들로, 836년 12월 흥덕왕이 후사 없이 사망하자, 자신의 숙부 均정과 무력 대결을 벌인 끝에 왕으로 즉위하였다.<sup>26)</sup> 그의 즉위에는 흥덕왕대 왕위계승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충공의 아들 金明, 곧 閔哀王의 지지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sup>27)</sup> 하지만 즉위 3년에 金明의 반란으로 왕위를 빼앗기고 자살로 최후를 맞이한다.

희강왕비인 문목왕후에 대해 신라본기에서는 갈문왕 충공의 딸로 나오고(<C-①>), 왕력에도 그 아버지를 충효 내지 중공이라 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녀가 충공의 딸임을 분명히 하였다(<C-②>). 하지만 문목왕후의 경우 책봉호로 추정되는 이름만 남아있어, 그녀가 정교인지 여부를 그 이름으로 확인하기는 힘들다고 여겨지며, 다른 기록도 전혀 없어 그녀와 정교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희강왕의 경우 그가 태자로 책봉되었거나, 실제로 책봉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대에 태자였다고 분식될 만한 상황이 전혀 없다. 그가 즉위 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전혀 전하지 않는다.<sup>28)</sup> 물론 왕위쟁탈전을 벌여 승리를 거두기까지 한 그가 아무런 정치적 지위를 가지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822년 당시 희강왕은 태자일 수가 없기에 이때 태자비가 된 정교의 혼인 상대가 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또 희강왕이 민애왕에게 왕위를 빼앗긴 이후, 그와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사망한 그의 숙부 均정의 직계가 왕위를 이어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가 사망한 이후 희강왕이 정당한 왕위계승권자인 태자였다는 분식이 이루어질 수는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그의 손자인 경문왕이 즉위하면서 희강왕을 다시 부각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희강왕은 이미 왕위에 올랐었기에 그를 굳이 태자로 분식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희강왕의 부인을 태자비로 기재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문목왕후를 정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6) 희강왕의 가계와 생애에 대해서는 김창겸, 「신라 하대 왕실세력의 변천과 왕위계승」 『新羅文化』 22, 2003, 216~220 참조.

27) 尹炳喜, 「新羅 下代 均貞系의 王位繼承과 金陽」 『歷史學報』 96, 1982, pp.66~67.

28) 희강왕의 아버지 김현정이 813년(헌덕왕 5) 당시 國相이면서 병부령과 수성부령을 역임하고 있다가, 819년 병이 깊어 거동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보아 그 직후 병으로 죽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제릉은 819년 즈음부터 부친을 이어 중요한 직위를 맡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李基東, 앞의 책, 1984, pp.165~166). 한편 김현창의 난 당시 진압군을 지휘했던 愍凌이 愍隆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822년경에 그 역시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후 그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 그의 구체적 행적이나 역임한 관직을 알 수 없다.

충공의 딸과 결혼한 것이 확인된 마지막 인물은 金均貞이다.<sup>29)</sup> 그는 원성왕 3남 예영의 아들로 회강왕의 부친 헌정의 동생이다. 균정은 812년(헌덕왕 4) 봄 시중에 임명되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린 것으로 되어 있다. 812년은 헌덕왕 정권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던 시점으로,<sup>30)</sup> 그가 헌덕왕과 가까운 관계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814년 8월 金憲昌이 후임으로 임명되면서 시중직에서 물러났는데, 그 이후 그의 관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835년(흥덕왕 10년)에 상대등에 오를 때까지 아무 직책을 맡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어쨌든 그는 흥덕왕 10년(835)에 최고 관직인 상대등에 취임할 정도로 정치적 위상이 큰 인물이었다.

그가 가졌던 정치적 위상은 헌덕왕~흥덕왕대에 왕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했기 때문으로 여겨지는데, 특히 충공의 딸과 결혼하면서 인척 관계를 맺은 것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흥덕왕대 상대등이자 유력한 차기 왕위계승권자인 충공의 사위로서 그의 위상은 확고해졌을 것이고, 이후 장인 충공이 흥덕왕 말년에 사망하자 상대등의 지위와 함께 왕위계승에 가까운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추정된다.<sup>31)</sup>

김균정의 부인으로 기록상 충공의 딸이라 확인되는 것은 현안왕의<sup>32)</sup> 모친인 照明夫人이다(<D-①>). 왕력에는 昐明夫人이라고 나오는데, 照가 昐과 의미가 통하므로 같은 인물로 볼 수 있겠다. 이 조명 혹은 혼명이라는 이름이 책봉호인지 본명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정교와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균정에게는 또 하나의 부인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왕력에 역시 균정의 아들인 神武王의 어머니 이름이 ‘貞△’라고 적혀있는 것이다(<D-④>). 신라본기에는 ‘朴氏 眞嬌夫人’이라고 되어 있어(<D-③>), 누락된 글자는 ‘嬌’로 추정된다.<sup>33)</sup>

왕력의 貞자를 眞의 이체자인 眞을 오각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sup>34)</sup> 앞서 여러 문헌들에서 확인되듯이 貞과 眞은 서로 오각·오사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둘은 동일 글자일 가능성이 많다. 현안왕과 신무왕의 기록을 종합하면 김균정에게는 정교라는 이름의 부인이 있고, 또 동시에 충공의 사위이기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정교라는 부인과 충공의 딸인 조명부인은 다른 사람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교부인은 신무왕의 어머니로, 조명부인은 현안왕의 어머니로 적시되어 있고, 신무왕과 현안왕은 이복형제라 되어 있다(<D-①>).

또 다른 문제는 822년 결혼한 정교는 김균정의 생모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교는

29) 김균정에 대해서는 李基東, 앞의 책, 1984, pp.163~167 참조.

30) 최흥조, 「新羅 哀莊王代の 政治變動과 金彦昇」, 『韓國古代史研究』34, 2004, pp.364~366.

31) 李基白, 앞의 책, 1974, p.122 ; 李基東, 앞의 책, 1984, p.163.

32) 현안왕에 대해서는 金昌謙, 「신라 憲安王의 卽位와 그 治績」, 『新羅文化』26, 2005 참조.

33) 『과르본 삼국유사 교감』, 연세대학교 박물관, 2016, p.52, 각주 7.

34) 정구복 외 편, 『(개정증보)역주 삼국사기3 주석편(상)』,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p.342.

822년 3월 발발한 김헌창의 반란이 진압된 직후에 태자비가 된다. 그런데 신무왕 김우징은 김헌창의 난을 진압할 당시 아버지 균정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참전하여 공을 세웠다.<sup>35)</sup> 즉 정교의 혼인 시점에 그는 大阿漚 관등을 가지고 군의 지휘관으로 활약하고 있었기 때문에, 822년 혼인하여 태자비가 된 정교의 자식일 수 없다.<sup>36)</sup> 이에 비록 태자비 정교와 신무왕의 모친이 같은 이름이라 보는 경우도 동명이인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sup>37)</sup>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공의 사위인 김균정의 부인 이름이 정교라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무시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 생각된다. 더구나 지금까지의 검토를 통해 다른 확인된 충공의 사위들이 태자비 정교의 혼인 상대가 될 수 없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제 장을 바꾸어 정교와 김균정의 부인이자 신무왕의 모친이 될 수 있는지를 보다 정밀하게 검토해 보자.

### Ⅲ. 문헌에 기재된 왕모의 의미와 태자비 정교

현전하는 사료들을 봤을 때, 신무왕이 822년 혼인하는 정교의 친아들이 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는 정교가 신문왕 김우징의 생모가 되기 어렵다는 의미이지, 그의 모친으로 기록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정교가 균정의 두 번째 부인이고, 신무왕은 첫 번째 부인의 소생이 된다면, 혼인 시점과 신무왕의 나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왕모에 대한 기록들을 분석하여 신무왕과 그 모친 정교의 관계를 추론해 보려 한다.

신라본기에 의하면 신무왕은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 민애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직후, 자신의 조부와 선친을 대왕으로 추존하고, 어머니 진교부인을 憲穆太后로 삼았다.<sup>38)</sup> 그런데 이때 진교부인이 책립된 태후는 어떤 의미일까. 원칙적으로 태후란 왕의 모친을 의미하지만,<sup>39)</sup> 이는 현왕의 친어머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왕계상 1대

35)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憲德王 14年 3月條, “伊漚均貞 迺漚雄元 大阿漚祐徵等 掌三軍徂征 角干忠恭 迺漚允膺 守蚊火關門”

36) 이기동, 「新羅興德王代의 政治와 社會」, 『國史館論叢』 21, 1991, p.115. 또 김우징은 828년(흥덕왕 3) 정월에 侍中이 된다(『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興德王 3年 正月條). 그가 6살에 시중이 되었을 리가 없으므로, 정교의 친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37) 이기동, 위의 논문, 1991, p.115. 그 외에도 신무왕의 모 진교부인이 박씨라고 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왕모나 왕비가 박씨 등으로 적혀있는 것은 당에 전달된 정보일 뿐으로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박씨라는 성은 진교부인이 충공의 딸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38)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神武王 即位條, “追尊祖伊漚禮英[一云孝眞] 爲惠康大王 考爲成德大王 母朴氏眞嬌夫人 爲憲穆太后 立子慶膺爲太子”

위의 왕비를 지칭하기도 한다. 신라에서도 마찬가지로였음을,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왕의 실제 모친이 아닌 사람이 母로서 대비(태후)에 책봉된 기록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본고에서 정교의 혼인 상대 후보 중 한명으로 살펴본 흥덕왕을 들 수 있다. 흥덕왕이 827년 혹은 831년에 당으로부터 신라왕에 책봉되면서, 그 어머니 박씨도 아울러 대비에 책봉되었다(<B-③④>). 그런데 이때의 왕모는 흥덕왕의 친모가 될 수 없다. 흥덕왕의 모친은 인겸, 곧 혜충태자의 부인되는 聖穆太后이다. 하지만 성목태후는 소성왕 원년 8월에 추봉된 것을 볼 때,<sup>40)</sup> 이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에 당으로부터 책봉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대비는 전왕비인 헌덕왕비 貴勝夫人, 곧 皇娥王后임이 분명하다. 또 이 대비 책봉에서 헌덕왕비를 박씨라고 했으므로, 일부 기록에서 헌덕왕비가 貞氏로 나타난 것이 오류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흥덕왕의 형수가 되는 전왕비 귀승부인이 당에 의해 흥덕왕의 모친으로서 대비에 책봉된 것이, 당이 가족 관계를 분명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태후를 일괄 왕의 모친으로 적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제로 당은 흥덕왕을 헌덕왕의 嗣子 곧 아들로 알고 있었고,<sup>41)</sup> 이것 때문에 전왕비를 왕모로 착각한 것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설사 당이 흥덕왕과 헌덕왕의 관계를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왕모와 왕의 관계를 잘못 기재한 결정적인 이유라 볼 수 없음을 다음 소성왕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800년(소성왕 2) 당으로부터 소성왕에 대한 책봉사 韋丹이 파견되었으나, 도중에 소성왕이 사망해 위단이 돌아가 버린다. 이후 808년(애장왕 9)에 애장왕이 金力奇를 파견하여 위단이 가지고 돌아간 선왕에 대한 책봉조서를 다시 줄 것을 요청하여 받았는데, 그 내용 중에 왕모 申氏를 대비로, 처 叔氏를 비로 책봉한다고 하였다.<sup>42)</sup> 여기에서 신씨와 숙씨는 실제 성씨가 아니라, 그들의 부친의 이름인 神述과 叔明의 첫 글자에서 따온 것이다. 그렇다면 이 책봉 내용에서 소성왕의 모가 된 신씨는 실제 소성왕의 모친인 성목태후가 아니라, 혈연상으로는 할머니가 되는 전왕 원성왕의 비인 淑貞夫人임이 분명하다.<sup>43)</sup>

그런데 이 책봉 내용에서 할머니를 왕모로 한 것은, 당이 정확한 관계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다. 당의 책봉은 기본적으로 신라의 요청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808년 김력기가 당에 소성왕 책봉서를 줄 것을 요청할 때, 대비를 왕모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39) 『獨斷』 卷下, “帝嫡妃曰皇后 帝母曰皇太后 帝祖母曰太皇太后”

40)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昭聖王 元年 8月條.

41) 『舊唐書』 卷199上, 列傳149上 東夷 新羅傳 太和5年, “金彥昇卒 以嗣子金景徽 爲開府儀同三司 檢校太尉 使持節大都督雞林州諸軍事 兼持節充寧海軍使 新羅王”

42)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哀莊王 9年 2月條, “母申氏爲大妃 妻叔氏爲王妃”

43)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元聖王 卽位條, “妃金氏神述角干之女”; 『三國遺事』 卷1, 王曆 第三十八元聖王, “妃淑貞夫人 神述角干之女”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단순히 책봉서의 내용을 그대로 말했을 뿐일 수도 있지만, 그가 책봉서와 함께 김언승과 충공, 애장왕 동생 添明에게 줄 門戟을 같이 요청하였고, 당이 이를 승낙하고 책봉서와 같이 내어주는 것에서,<sup>44)</sup> 책봉 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신라의 요청 사항에 입각하여 이루어짐을 짐작할 수 있다.

당에서 소성왕에 대해서는, 흥덕왕의 경우와 달리, 전왕 원성왕의 嫡孫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sup>45)</sup> 그럼에도 왕모라고 잘못 적고 있다. 이는 왕모라는 표현이 당이 파악하고 있던 정보에 입각하여 쓴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결국 당이 임의로 (왕)모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기보다는, 신라가 요청한 내용을 그대로 책봉에 반영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신라에서 (왕)모라고 적는 경우 그것이 반드시 생모를 의미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례들 보다 앞선 시기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문헌에 기록된 孝昭王의 왕모도 생모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신라본기에 의하면 687년(신문왕 7) 2월에 신문왕의 元子가 태어났고, 691년 3월 1일에 왕자 理洪, 곧 효소왕을 태자로 책봉하였다. 효소왕 즉위조에 의하면, 이홍의 모친은 一吉澮 金欽運의 딸 神穆王后이다. 신문왕의 원래 왕비는 金欽突의 딸이었으나, 즉위 초에 부친의 반란 처리과정에서 출궁되고, 683년 신목왕후를 새로이 왕비로 맞아들였다. 효소왕의 생모가 신목왕후임이 확실하다면, 효소왕은 687년 출생한 원자일 수밖에 없고, 그는 5살에 태자로 책봉되어 6살에 왕위에 오른 것이 된다. 역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진흥왕이나 혜공왕, 애장왕의 사례를 생각하면, 왕이 직접 통치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태후 등이 섭정을 하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보이나,<sup>46)</sup> 그와 관련한 기록이 없다. 이는 효소왕과 687년에 태어난 원자가 서로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유사』의 萬波息笛條가 주목된다. 만파식적조에 의하면 신문왕은 즉위 직후 선왕을 위해 感恩寺를 지었는데, 682년(신문왕 2) 감은사에 가서 용으로

44) 『新唐書』 卷220, 列傳145 東夷 新羅傳 元和3年.

45) 『舊唐書』 卷199上 列傳149上 東夷 新羅傳 貞元14年 “敬信卒 其子先敬信亡 國人立敬信 嫡孫俊邕爲王”

이 뿐만 아니라 신라 하대 왕들이 전왕과 어떤 가족 관계였는지에 대해, 당은 흥덕왕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확히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손흥호, 앞의 논문, 2016, pp.317~318).

46) 진흥왕의 경우 『삼국사기』에 의하면 7세, 『삼국유사』에는 15세의 나이로 즉위하여 태후가 섭정을 하였다고 전하며, 혜공왕이 8세로 즉위했을 때도 태후가 섭정을 맡았다. 애장왕 역시 13세의 나이로 즉위했기에 숙부 언승이 섭정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애장왕이 즉위 6년만인 805년에 이르러 모친을 태후에 봉하고 부인을 왕후로 책봉하는 조치를 취하고, 당으로부터 신라왕으로 책봉을 받는다. 이 해는 애장왕의 나이가 18세가 되던 때로, 이 시점부터 그가 친정했을 가능성이 높다(최홍조, 앞의 논문, 2004, pp.347~350). 그렇다면 신라에서는 대체로 18세 이전에는 태후 등이 섭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보인다.

부터 黑玉帶를 얻고, 또 용의 가르침을 받아 萬波息笛을 만드는 대나무를 잘라 돌아온다. 왕의 부재중 궁궐을 지키고 있던 태자 理恭(洪), 곧 효소왕이 이 소식을 듣고 마중나가 축하하였다. 그리고 그가 흑옥대에 용이 깃들어 있음을 알아차리고 왕에게 알려준다.<sup>47)</sup>

이 설화를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볼 수는 없지만, 신문왕대에 이홍, 곧 효소왕이 어느 정도 장성한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691년 3월 1일 태자 책봉 사실은 분명하므로, 그가 682년 당시 이미 태자였다는 기록은 후대에 기록하는 과정에서의 윤색으로 보이지만,<sup>48)</sup> 그가 687년 2월에 태어난 원자가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으며, 그의 모친은 신목왕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sup>49)</sup>

이상의 사례들에서 신라에서는 생모만이 아니라 왕위계승순서상 전왕의 부인이나 부친의 정식 부인을 모라고 적시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50)</sup> 이는 왕의 모

47) 『三國遺事』 卷2, 紀異2 萬波息笛條, “開耀元年辛巳七月七日卽位 爲聖考文武大王 創感恩寺於東海邊 明年壬午五月朔[一本云天授元年 誤矣] … 太子理恭[卽孝昭大王]守關 聞此事走馬來賀 徐察奏曰 此玉帶諸窠皆眞龍也 王曰 汝何知之 太子曰 摘一窠沉水示之 乃摘左邊第二窠沉溪 卽成龍上天 其地成淵 因號龍淵”

48) 『삼국유사』 만파식적조의 주석에 의하면, 이 일이 682년(신문왕 2)이 아니라 天授 원년(690, 신문왕 10)의 일이라는 기록도 있다고 하였다. 한편 『三國遺事』 卷3, 塔像4 臺山五萬眞身條에 있는 찬자의 주석에 효소왕이 16세의 나이로 즉위했다고 되어 있는데, 효소왕이 16세에 즉위했다면 그는 신문왕 즉위전인 677년 태어난 것이 된다. 효소왕이 677년에 태어난 것이 맞다면, 690년의 일이라는 기록이 잘못이라는 일연의 주석과 달리, 682년 보다 690년이 더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다만 690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효소왕의 태자 책봉은 691년의 일이므로, 이홍을 태자라고 한 것은 나중의 신분을 소급하여 적은 것이다.

49) 辛鍾遠은 전왕비였던 김흠돌의 딸 소생으로 파악한 바 있다(辛鍾遠, 「新羅五臺山事蹟과 聖德王의 卽位背景」, 『崔永禧先生 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탐구당, 1987, pp.122~123). 이와는 달리 신라본기와 왕력의 모친 기록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즉위시 효소왕의 나이가 16세일 수 있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신문왕이 정식으로 왕비가 되기 이전부터 신목왕후와 관계를 맺어 3명을 아들을 두었다는 것이다(徐禎穆, 「孝昭王의 출생 관련 기록의 검토」, 『震檀學報』 122, 2014, p.41 ; 曹凡煥, 「신라 중대 聖德王의 왕위 계승 再考—三國遺事의 五臺山事蹟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43, 2015, pp.95~98). 그러나 이 경우 신목왕후가 정식으로 왕비가 된 이후에 태어난 첫 아이를 元子라 표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효소왕의 동생으로 뒤이어 즉위한 聖德王도 신라본기 즉위조에 의하면 신문왕의 둘째 아들이고 효소왕의 母弟라 되어 있다. 하지만 그 역시 『三國遺事』 卷3 塔像 「臺山五萬眞身」에 의하면 효소왕 즉위시 이미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것처럼 기술되고 있다. 그렇다면 성덕왕 역시 효소왕과 마찬가지로 신목왕후의 소생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산오만진신」은 종교적 색채가 강하고 또 용어 등에 후대적 요소가 강해, 성덕왕 즉위 당시의 사실을 반영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50) 진흥왕과 같이 전왕의 왕비가 아니라 왕의 생모가 태후가 되는 경우도 있어(『三國遺事』 卷1 紀異1 眞興王, “第二十四眞興王卽位 時年十五歲 太后攝政 太后乃法興王之女子 立

친을 이야기할 때, 실제 혈연관계 보다 계보상의 관계를 우선시함을 보여준다. 즉 왕의 경우 생모 보다 부왕의 正妃와 같이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계보상의 모친을 우선하여 기재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신무왕의 모로 기록된 정교(진교)부인 역시 균정의 생모가 아니라 부친 균정의 다른 부인일 수 있으며, 신무왕의 나이 문제 때문에 그 모친으로 기재된 정교(진교)부인이 헌덕왕대 태자비 정교와 동일인물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그럼 이제 신무왕이 자신의 모친으로 생모가 아니라 정교(진교)부인을 내세운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생모가 아닌 사람을 왕모로 내세우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생모가 아니라 계보상의 모친을 왕모로 하는 현상은 기록의 부실함이나 오류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필요에 의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왕의 모에 대한 기록은 기본적으로 왕이 즉위한 후 자신의 선친이나 조부를 대왕으로 追尊할 때, 함께 추봉 내지는 책봉하면서 확인되는 것이다. 또 당으로부터 책봉 받을 때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때 중요한 것은 왕과의 실제 혈연관계가 아니라, 왕모를 태후로 추봉 혹은 책봉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현왕의 왕이 아닌 부모에 대한 대왕·태후 추봉은 태종무열왕으로부터 시작한다.<sup>51)</sup> 태종무열왕은 진골로서 최초로 왕위에 오른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전까지와 다르게 태종이라는 묘호를 사후에 받게 되는데, 이는 종묘와 관련한 호칭이다. 아울러 武烈이라는 시호 역시 유교적인 것이어서, 전륜성왕이나 왕즉불 관념을 바탕으로 한 이전과 달리, 유교 관념을 통해 왕권의 정당성과 권위를 확보하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태종무열왕이 즉위한 직후 자신의 부모를 대왕과 태후로 추봉하고, 이듬해 진흥왕 이후 처음으로 태자를 책봉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sup>52)</sup>

태종무열왕에게 태종이라는 묘호와 무열이라는 시호를 올린 문무왕 역시 유교 이념

宗葛文王之妃”), 일괄적으로 전왕의 왕비가 왕모로서 태후(대비)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생모만이 왕모라 불리웠던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한편 왕은 아니지만 金庾信의 자식들의 모친 역시 기록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 김유신의 부인으로는 오로지 태종무열왕의 셋째 딸 智炤夫人만이 기록에 전한다. 둘은 655년(태종무열왕 2) 10월에 혼인하였다(『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太宗武烈王 2年 10月條). 그때 김유신의 나이는 61세였다. 김유신에게는 三光, 元述, 元貞, 長耳, 元望이라는 5명의 아들과 4명의 딸, 그리고 庶子 軍勝이 있었다. 이중 균승을 빼고는 모두 지소부인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그가 61세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전혀 가지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균승이라는 서자의 존재를 볼 때, 지소부인과의 혼인 이전에 혼인을 했음은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혼인 당시 김유신의 나이를 생각하면 김유신의 다섯 아들과 네 딸, 모두 9명의 자녀가 전부 지소부인 소생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정실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소부인의 소생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51) 『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太宗武烈王 元年 4月條, “王考爲文興大王 母爲文貞太后”

52) 위의 책, 2年 3月條.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는 즉위한지 5년 만에 장남을 태자로 책봉하고,<sup>53)</sup> 삼국 통일전쟁이 일단락된 679년(문무왕 19) 8월에는 신라에서 처음으로 태자의 거처인 동궁을 건립하였다. 신라에서 왕위계승권자인 태자의 존재는 이전부터 확인되나, 이전까지 불교를 통해 왕권의 정당성과 권위를 뒷받침했던 신라에서는 따로 동궁을 건립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무왕은 태자의 지위와 위상을 유교 이념을 활용해 확보하려 하였기에, 새로이 태자의 거처 동궁을 왕궁인 월성 옆에 건설한 것이다.<sup>54)</sup>

이러한 유교 이념의 활용은 왕실 조상을 모시고 제사지내는 종묘제도의 시행으로 이어졌다고 보인다.<sup>55)</sup> 신문왕은 687년(신문왕 7) 4월 祖廟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 종묘 五廟制가 성립해있었던 것을 엿볼 수 있다.<sup>56)</sup> 태종무열왕~신문왕대에 유교 이념이 강조되고 활용되어 가면서 종묘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종묘에는 왕과 왕후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낸다. 즉 종묘를 통해 왕실의 권위와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단순히 왕만이 아니라 왕후의 존재도 중요했던 것이다. 특히 신라의 경우 친족에서 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다. 『隋書』 신라전에 나오는 신라의 상장례를 보면, 왕과 부모처자의 상에는 1년간 상복을 입는다고 되어 있어,<sup>57)</sup> 유교 예제 보다 처의 상의 중요성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妻와 그 부모가 친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신라 종묘에서 왕후의 존재도 중요했음은 문무왕이 가야 시조 수로왕의 신위를 신라 종묘에 모시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58)</sup> 문무왕의 이 조치는 가야가 멸망한지 오래되어 김수로왕 사당이 제대로 관리되고 제사가 지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에서 출발한 것이겠지만, 김수로왕의 위패를 신라 종묘에 모시는 보다 실질적인 이유는, 유교 예제에 입각한 종묘를 통해 다른 진골귀족과 구분되는 태종무열왕 직계 왕실 계보를 확립하는 동시에, 자신의 모계인 김유신 세력을 중요시하고 강조하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sup>59)</sup>

이와 같이 신라에서는 종묘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종묘에 배향되는 왕모·왕비 및 그 가계를 중요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왕위계승권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종묘제도의 시행과 함께 종묘에 왕과 함께 봉안되는 왕후가 누

53) 위의 책, 卷6 新羅本紀6 文武王上 5年 8月條.

54) 신라 동궁 건설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홍승우, 앞의 논문, 2017, pp.219~233 참조.

55) 나희라, 「신라의 종묘제 수용과 그 내용」 『韓國史研究』 98, 1997 ; 蔡美夏, 「新羅 宗廟制의 受容과 그 意味」 『歷史學報』 176, 2002.

56)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神文王 7年 4月條.

57) 『隋書』 卷81, 列傳46 東夷 新羅傳, “王及父母妻子喪 持服一年”

58) 『三國遺事』 卷2, 紀異2 駕洛國記, “泊新羅第三十王法敏 龍朔元年辛酉三月日 有制曰 朕是伽耶國元君九代孫仇衝王 降于當國也 所率來子世宗之子 率友公之子 庶云匡干之女 文明皇后 寔生我者 茲故元君於幼冲人 乃爲十五代始祖也 所御國者已曾敗 所葬廟者今尚存 合于宗祧 續乃祀事”

59) 蔡美夏, 앞의 논문, 2002, pp.60~62.

구인가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졌을 것이고, 왕위계승권자가 되는 것에는 모친이나 外祖父가 누구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왕의 계보에 대한 기재도 기본적으로 그 기준에 따라 적었을 것이고, 왕의 모친 역시 생모보다는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계보상의 모친, 예컨대 종묘에 배향되는 부왕 내지 전왕의 정비 등을 우선시 하였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후대이기는 하지만 孝恭王과 神德王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효공왕의 사례를 보면, 신라본기에 의하면 효공왕은 헌강왕의 서자이고 그의 모친은 김씨라 하였다. 그리고 898년(효공왕 2) 1월에 모친 김씨를 義明王太后로 책봉하였다.<sup>60)</sup> 그런데 의명이라는 이름은 효공왕의 부친 헌강왕의 비인 懿明夫人과 유사하다. 즉 의명왕태후는 효공왕의 생모가 아니라, 계보상의 어머니, 곧 부친의 정비였을 가능성이 높다. 서자로서 왕위계승의 자격에 문제가 있었던 효공왕이, 헌강왕의 정비를 자신의 공식적 모친으로 삼아 자신의 왕위계승을 정당화시키려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다음으로 신덕왕의 경우를 보면, 신라본기 즉위조에 의하면 신덕왕은 성이 박이고 阿達羅尼師今의 遠孫이라고 되어 있다.<sup>61)</sup> 즉 그전까지 김씨가 왕위를 계승하던 것과 달리 박씨로 왕위에 오른 특수한 사례이다. 하지만 이미 여러 논자들이 언급했듯이 그의 부계 성씨는 김씨이다.<sup>62)</sup> 그럼에도 박씨를 내세운 것은 그의 모계와 관련 있는 것 같다. 왕력에 신덕왕의 계보가 보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신덕왕의 부친인 예겸은 생부가 아니라 義父였다고 하면서 생부는 興廉大王으로 추봉된 文元 伊干, 조부는 文官 海干으로 적시되어 있다. 그리고 아달라왕과 계보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이들이 아니라, 모친 眞花(貞和)夫人의 조부인 元叡(隣) 角干이라고 되어 있다.<sup>63)</sup>

만약 왕력의 계보가 정확하다면, 그가 왕위 계승과 관련하여 내세운 계보는 부계 보다는 모계였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실제로 신덕왕은 자신의 조부를 대왕으로 추봉하지 않았지만, 외조부인 順弘 각간은 成武大王으로 추봉하였다. 신라 하대에 왕이 즉위한 이후 그의 부친이나 조부를 대왕으로 추봉하는 것은 그들을 종묘에 배향하려는 의도 내지는 자신의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계보를 정립하려 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sup>64)</sup>

60) 『三國史記』 卷12, 新羅本紀12 孝恭王 卽位條와 2年 正月條.

61) 위의 책, 神德王 卽位條, “姓朴氏 諱景暉 阿達羅王遠孫 父父兼[一云銳謙] 事定康大王爲大阿滄 母貞和夫人 妃金氏憲康大王之女”; 위의 책, 元年 5月條, “追尊考爲宣聖大王 母爲貞和太后 妃爲義成王后”

62) 권덕영, 앞의 논문, 2008, pp.206~210 참조.

63) 『三國遺事』 卷1, 王曆 第五十三神德王, “朴氏 名景徽 本名秀宗 母眞花夫人 夫人之父順弘角干 追諡成武大王 祖元叡角干 乃何達王之遠孫 父文元伊干 追封興廉大王 祖文官海干 義父銳謙角干 追封宣成大王 妃資成王后 一云懿成又孝資 壬申立 理五年 火葬藏骨于箴峴南”

신덕왕의 부계 성씨가 김이고, 그의 모계도 진짜 아달라이사금의 후손이었던지는 불분명하지만, 그가 왕위에 오른 후 자신의 계보를 정리하면서 친부와 의부는 물론 외조부까지 대왕으로 책봉했던 것은, 모계 역시 왕위계승권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앞서 살펴 본 문무왕의 김수로왕 종묘 배향과 같이 모계 조상을 종묘에 모시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신덕왕의 경우 종묘에 외조부를 배향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이것이 그가 순흥의 외손자여서 왕위에 올랐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신덕왕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우선 그가 현강왕의 사위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의 의부 예겸의 딸이 효공왕비가 된 사실도 있지만,<sup>65)</sup> 경문왕이 현안왕의 사위로서 즉위한 사례를 참조해 볼 때, 그의 왕위계승 자격에는 효공왕의 처남이라는 것 보다 효공왕 부왕의 사위 자격이라는 것이 더 중요했을 것이다.<sup>66)</sup> 다만 그가 왕위계승권과 관련하여 자신의 계보를 정립하면서 모계 역시 부계 및 처계와 함께 내세웠던 것은 분명하다.

즉 신라에서 왕위계승권은 부계 혈연으로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모계(외조부)와 처계(처부)를 통해서도 성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즉위한 왕이 즉위 초 자신의 선계를 추봉하고 종묘에 배향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계보를 정리하면서 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을 때, 실제 생부와 생모가 아니라 정당한 왕위계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계보상의 부모와 조부·외조부 혹은 妻父를 내세웠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검토들을 통해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에 나오는 왕의 모친에 대한 기록들은 기본적으로 책봉이나 추봉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이는 왕위계승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계보를 중요시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결론이 타당하다면 정교의 혼인 대상에서 균정을 제외했던 결정적인 이유인 신무왕의 나이 문제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즉 신무왕의 모친 貞嬀가 생모가 아닐 수도 있으며, 모친이라고 기재된 것은 그가 신무왕 부친 균정의 정식 부인 내지는 왕위계승권과 연관되어 중요한 계보상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신무왕의 경우 그 부친 균정이 왕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정당한 왕위계승권의 표방을 위해 부왕의 정비를 모친으로 할 필요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신무왕 자신이 자력으로 즉위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생모를 태후로 추봉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새어머니인 정교를 태후로 삼았을까. 이 문제의 해답에 대한 단서는 정교를

64) 蔡美夏, 앞의 논문, 2002, p.48.

65) 『三國史記』卷12, 孝恭王 3年 3月條.

66) 이재환, 「新羅 眞骨의 ‘家系 分枝化’에 대한 재검토-사위의 왕위계승권을 중심으로」 『大丘史學』127, 2017, pp.21~23. 敬順王 역시 외조부가 憲康王이어서 그의 모계가 왕위계승의 근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태자비로 삼았다는 기록과 흥덕왕 사후에서 신무왕 즉위까지의 왕위계승과정에서 엿볼 수 있다.

헌덕왕은 상대등 지위에 있다가 애장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으며, 819년(헌덕왕 11) 2월 상대등 金崇斌이 죽자 흥덕왕이 상대등에 올랐다가 822년(헌덕왕 14) 부군에 책봉되었고, 826년 헌덕왕이 사망하자 왕으로 즉위한다. 그리고 흥덕왕에게도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동생 상대등 忠恭을 태자로 공식화하여 왕위계승을 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sup>67)</sup> 그러나 충공이 흥덕왕 보다 먼저 사망하면서 태자가 공식이 되었다. 충공은 대체로 흥덕왕 10년(835) 2월경에 태자가 되었다가, 얼마 있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sup>68)</sup> 이때 균정이 상대등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균정이 상대등에 임명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덕왕, 흥덕왕, 충공 삼형제는 상대등직을 연이어 이어 받으며 권력을 장악했고, 충공까지 태자에 책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때 상대등은 당시 권력의 중추였던 것은 물론, 차기 왕위계승권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69)</sup> 그렇다면 충공이 태자로 책봉되었거나 혹은 사망한 후 균정이 상대등직에 오른 것은, 왕위계승 후보군 중에 그가 차기 왕위에 가장 가까웠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흥덕왕 사후 그는 가장 먼저 지지 세력을 이끌고 궁에 들어가 왕위를 올랐다가, 뒤이어 궁으로 난입한 희강왕 세력과의 다툼 과정에서 사망하고 만다.<sup>70)</sup> 이 왕위계승분쟁은 무력적 충돌의 유무라는 차이는 있지만, 김주원과 원성왕의 왕위 경쟁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다. 즉 김균정과 희강왕 모두 유력한 왕위계승 후보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희강왕이 상대등이었던 김균정과 왕위계승 경쟁을 벌일 수 있었

67) 『鳳巖寺 智證大師塔碑』에 흥덕왕대에 충공이 太子로서 監撫했다고 한다(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pp.180~181, “及興德大王纂戎 宣康太子監撫 去邪鑿國 樂善肥家”). 충공이 실제로 태자로 책봉되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신정훈, 『8세기 신라의 정치와 왕권』, 한국학술정보, 2010, p.262). 다만 흥덕왕대 충공이 왕위계승권자인 태자의 역할을 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차기 왕위계승권자로 인식했었기 때문에, 그를 태자로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손홍호, 앞의 논문, 2016, p.326).

68) 李基白, 앞의 책, 1974, p.180 ; 李基東, 앞의 책, 1984, p.163. 충공이 흥덕왕 즉위 직후에 태자에 책봉되었다고 보기도 하나(金昌謙, 앞의 논문, 1993, p.168), 충공이 흥덕왕 10년 2월까지 상대등으로 재임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식으로 태자에 책봉되었다면 그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

69) 상대등의 직위가 왕위계승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권영오, 『신라 하대 왕위계승과 상대등』, 『지역과 역사』 10, 2002). 오히려 이전의 왕들과의 혈연관계가 왕위계승권의 결정적 요소였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하대에 들어서 상대등에서 왕위에 오른 사례가 많아지면서, 상대등이 여러 신하들을 총괄하는 지위일 뿐이라는 인식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반면 다음 왕위계승권자에 가까운 존재라는 인식이 점차 강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70) 『三國史記』 卷44, 列傳44 金陽傳.

던 배경은 무엇일까.

기존 연구들에서는, 회강왕과 균정이 왕위쟁탈전을 벌인 것을, 원성왕계가 개별 가계로 분지화하여 권력 투쟁을 벌인 것으로 이해했다.<sup>71)</sup> 우선 원성왕의 장남 인겸계(헌덕왕, 흥덕왕, 충공)와 삼남 예영계(헌정, 균정)가 경쟁하였고, 흥덕왕과 충공 사후에 인겸계로는 충공의 아들인 어린 민애왕만이 남게 되어, 예영계가 왕위 계승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고, 회강왕과 균정 사이에 왕위쟁탈전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하였다.<sup>72)</sup> 즉 헌정의 아들 회강왕과 균정이 왕위쟁탈전을 벌일 수 있었던 배경은 예영, 나아가 하대 왕실의 실질적 시조라 할 수 있는 원성왕과의 부계 혈연 관계였다고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회강왕과 균정이 쟁탈전을 벌인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오히려 둘 다 공인된 왕위계승권자였던 충공의 사위라는 공통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충공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예영계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sup>73)</sup> 반대로 예영계의 두 사람이 현재 권력의 중추에 있었던 충공과 연결하고자 혼인을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균정이 상대등의 지위를 차지했던 것도 충공의 사위라는 것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며, 균정에 비해 정치적 위상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회강왕이 왕위계승분쟁을 벌일 수 있었던 것도 처부 충공 때문이었을 것이다.<sup>74)</sup>

충공이 흥덕왕대에 실질적으로 태자의 역할을 수행했고 왕위계승권을 인정받았기에, 흥덕왕과 충공이 비슷한 시기 사망하자, 이제 그 아들이나 사위가 유력한 왕위계승 후보로 인식되었던 것이다.<sup>75)</sup> 그중 상대등이었던 균정이 가장 유력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유력 후보인 충공의 아들 민애왕은 당시 19세의 나이로,<sup>76)</sup> 비록 시

71) 李基東, 앞의 책, 1984, pp.163~167

72) 尹炳喜, 앞의 논문, 1982, pp.61~67 ; 權英五, 「新羅下代 왕위계승분쟁과 閔哀王」 『韓國古代史研究』 19, 2000, pp.262~269.

73) 손흥호, 앞의 논문, 2016, pp.323~325.

74) 기존 연구들도 회강왕이 균정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 인겸계 세력(민애왕)의 의도와 힘에 의한 것으로 보아왔다(尹炳喜, 앞의 논문, 1982, pp.66~67). 그러나 근본적으로 회강왕이 왕위계승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에는 충공의 사위라는 점이 중요했을 것이다.

75) 이재환, 앞의 논문, 2017, pp.105~108에서도 회강왕과 균정의 대립, 나아가 민애왕까지 포함한 삼자간의 왕위쟁탈전을 직전 왕위계승권자인 충공의 두 사위와 아들 사이의 경쟁으로 파악하면서, 당시 아들만이 아니라 사위도 왕위계승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당시 태자의 아들과 사위가 당연한 왕위계승권을 가지는가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하겠지만, 회강왕과 균정이 충공의 사위라는 신분을 바탕으로 왕위쟁탈전에 임했다고 본 점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6) 「閔哀王石塔 舍利盆記」(韓國古代社會研究所編, 1992 앞의 책, pp.356~357), “敏哀大王諱明 宣康大王之長子 今上之老舅 以開成己未之年 太蔭之月 下旬有三日 奄奔蒼生 春秋二十三”

중의 지위에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상대등 균정에 비해 열세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직접 나서기 보다는 희강왕을 지지하면서 가장 유력한 왕위계승권자였던 균정을 제거했다고 보인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반란을 일으켜 희강왕을 자살로 몬 후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즉 희강왕, 민애왕, 균정이 직전의 왕위계승권자인 충공의 아들과 사위로 왕위를 두고 경쟁했는데,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와 명분이 뒤지는 희강왕과 민애왕이 손잡고 유력한 균정을 먼저 제거하는 양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sup>77)</sup>

이상과 같이 균정이 충공의 사위로 당시 가장 유력한 왕위계승권자에 가까웠다는 추론이 타당하다면, 신무왕이 장보고의 힘을 빌려 민애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후 전왕을 시해한 정당성, 다시 말해 자신의 아버지 균정이 진정한 왕위계승권자임을 강조하기 위해, 충공과 부친의 관계를 중요시했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즉위 직후 조부 예영과 아버지 균정을 대왕으로 추봉하면서 5묘를 정비한 것으로 보이는데,<sup>78)</sup> 이때 자신의 생모보다 충공의 딸인 계모를 태후로 삼으면서 균정이 충공의 정당한 계승자임을 강조했을 것이다.<sup>79)</sup> 그 결과 정교가 신무왕의 모친으로 공식화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나아가 신무왕 이후 문성왕, 헌안왕 등 그 후계자들이 연이어 즉위하는 과정에서,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계보적으로 확립하고자 하면서, 균정이 선강태자 충공을 잇는 정당한 왕위계승권자임을 공식화시키려 했을 것이다. 균정은 공식적으로 왕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왕위에 오르지 못한 충공처럼 균정도 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즉 어느 시점에선가 균정이 공식적으로 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그 부인 정교 역시 태자비라는 지위를 가졌다고 분식되었으며, 이에 둘의 혼인 사실을 태자비가 되었다는 식으로 서술하게 된 것이라 추정된다.

한편 헌안왕의 어머니 照明(昞明)夫人도 충공의 딸이라 되어 있는데, 그녀와 정교는 어떤 관계일까. 균정이 이미 신무왕의 생모와 혼인했었고 또 정교와도 822년 혼인했다면, 그 이후 또 다른 충공의 딸과 혼인했다고 하기는 힘들 것 같다.<sup>80)</sup> 헌안왕의 계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점에 주목할 수 있다. 하나는 그가 신무왕과 이복형제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어머니가 충공의 딸이라는 것이다. 균정이 822년 충공의 딸 정교와 혼인한 것이 맞다면 헌안왕의 생모는 정교일 가능성이 크다.

헌안왕이 신무왕의 동생이기는 하지만 그와 상당한 연령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정

77) 신무왕이 균정이 죽은 것을 원망했고, 이를 민애왕과 이흥이 못마땅하게 여긴 것도(『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僖康王 2年 4月條), 균정이 원래 왕위계승권자에 가장 가까웠고 그것을 민애왕 세력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78)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神武王 卽位條.

79) 생모보다 계보상 부왕의 정비를 모친으로 기록한 직접적인 사례는 앞서 언급한 효공왕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80) 선석열, 앞의 논문, 2016, p.179에서도 균정이 충공의 딸 두 명과 혼인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교가 혼인한 822년 당시 김우정은 이미 장성하였고, 정교의 자식은 822년 이후 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둘의 나이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 현재 헌안왕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sup>81)</sup> 하지만 860년 그에게 20세와 19세의 딸이 있었다고 한다.<sup>82)</sup> 그가 18살 정도에 혼인하고 첫딸을 낳았다고 추정한다면, 860년에 그의 나이는 38살 정도라 할 수 있으므로, 연령적으로 822년에 혼인한 정교의 아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마 헌안왕의 생모는 822년 혼인한 충공의 딸, 곧 태자비 정교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헌안왕모인 조명부인(혼명부인) 역시 정교와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두 이름이 다른 문제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둘이 동일인인지 아닌지를 확정할 수 없다. 만약 동일인이 아니라면 헌안왕이 신무왕의 이복동생이기 때문에, 신무왕의 어머니로 정교가 강조된 결과, 헌안왕의 어머니 이름에 무언가 혼동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정도로만 추정할 뿐이다.<sup>83)</sup>

결국 태자비 정교는 흥덕왕 혹은 헌덕왕의 태자와 혼인한 것이 아니라 균정의 재취로 보아야 하며, 후일 그 자손들이 왕위에 오른 이후 두 사람을 추송하는 과정에서 균정이 왕위에 오르는 못했지만 정당한 왕위계승권자였다는 인식이 만들어지면서, 그들의 혼인 기사가 정교가 태자비가 되었다는 표현으로 기술된 것이라 추정된다. 후대의 인식 혹은 의도가 개입되어 분석된 기록이라 할 수 있으며, 여러 종류의 사료를 취합하여 작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의 일종이라 생각된다.<sup>84)</sup>

81) 헌안왕을 문성왕 11년(849)에 상대등이 된 義正, 그리고 흥덕왕 11년(836)에 당에 사신으로 사 겸 숙위로 파견되었다가 이듬해 귀국한 후 문성왕 2년(840) 1월에서 5년 1월까지 시중직을 역임한 義踪과 동일한 인물로 보기도 한다(李基東, 앞의 책, 1984, pp.170~171). 義正은 헌안왕일 가능성이 크지만 義踪도 동일인인지 분명하지 않아, 본고에서 헌안왕의 연령을 추정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다. 다만 義踪이 헌안왕이라고 하더라도, 연령적으로 822년 혼인한 정교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82) 『三國史記』 卷11, 憲安王 5年 9月條.

83) 照明(昶明)이 정교의 이표기일 수도 있고, 혹은 照明(昶明)이 신무왕의 생모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더 이상 추정할 기록에 없기에 정확한 사실을 알 수는 없다. 신라 인명 표기들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조금 더 자세한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후후의 과제로 돌린다.

84) 『삼국사기』 헌덕왕대 기사가 여러 자료를 취합하여 작성하여 오류가 있었던 점은 다른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헌덕왕 13년(821) 4월에 충공이 사망했다는 내용이다(『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10 憲德王 13年 4月條, “侍中金忠恭卒 伊滄永恭爲侍中”). 이는 명백한 오류로, 보통 이때 충공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천재지변 등에 책임을 지고 시중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파악한다(李基白, 앞의 책, 1974, p.177). 후보도 충공의 사망 기사와 함께 태자비 정교가 사료 정리상의 어떤 의도성이 개입되어 나타난 오류로 보았다(朱甫墩, 「新羅 下代 金憲昌의 亂과 그 性格」, 『韓國古代史研究』51, 2008, p.242).

## IV. 맺음말

이상에서 헌덕왕대 태자비 정교와 혼인한 상대가 누구인지와 그가 된 태자비의 의미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헌에 나타난 충공의 딸과 결혼했거나 결혼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822년 충공의 딸과 혼인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먼저 헌덕왕비인 귀승부인이 충공의 딸이라는 『삼국유사』 왕력의 기록은 오류로, 헌덕왕이 정교와 혼인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흥덕왕의 경우, 그가 헌덕왕대 태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의 부인은 소성왕의 딸 장화부인이 분명하므로, 역시 정교와 혼인했다고 할 수 없다.

충공의 사위가 확실한 사람으로 희강왕이 있지만, 그는 흥덕왕 사후 왕위쟁탈전을 벌인 끝에 왕위에 올랐기에, 실제로 태자의 지위에 있었던 적도 없고, 태자였던 것처럼 분식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그의 부인이 태자비가 되었다고 기록될 수가 없으므로, 희강왕비를 태자비 정교로 보기는 힘들다.

남은 것은 김균정인데, 그는 최소한 두 명의 부인이 있었고, 그의 부인 중 하나의 이름은 정교(진교)이며, 다른 하나는 충공의 딸 조명부인이다. 김균정이 충공의 딸과 결혼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그의 부인 이름이 정교(진교)라는 점을 볼 때, 헌덕왕대 태자비가 된 충공의 딸 정교의 혼인상대는 김균정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기록상 균정의 부인 정교는 신무왕의 어머니로 되어 있는데, 정교가 태자와 혼인한 해에 이미 신무왕은 장성한 상태였기에, 그녀가 신무왕의 생모가 될 수는 없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실린 왕의 모친에 대한 기록들은 생모를 적은 것이 아니라,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보상의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교가 신무왕의 친모가 될 수는 없지만, 민애왕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신무왕이 왕위계승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부친의 재취이자 자신의 義母가 되는 정교부인을 자신의 공식적인 계보상 어머니로 고정했다고 추정되며, 그 결과 신무왕의 모친이 정교로만 남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태자가 아닌 균정의 부인 정교를 태자비로 적은 것은 후대의 분식 결과이다. 신무왕과 그 후계자라 할 수 있는 문성왕, 현안왕까지 균정의 직계가 왕위에 오르면서, 균정을 정당한 왕위계승권자로 분식하여 태자의 지위에 올랐던 것처럼 만들었고, 그 결과 균정이 정교와 혼인한 사실이 마치 그녀가 태자비가 된 것처럼 기록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 기록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그 기사가 삽입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정교가 된 태자비는 실제 헌덕왕의 태자와 무관한 것으로, 이를 통해 헌덕왕대 부군이 태자와 다른 지위 내지는 신분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흥덕왕이 된 부군은 태자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지위이자 신분임이 분명하며, 그가 부군

이 되어 들어가 살게 된 월지궁도 태자의 거처이자 공적 활동의 공간인 태자궁, 곧 동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논문투고일 : 1월 31일, 논문심사완료일 : 2월 20일, 논문게재확정일 : 2월 21일

## [참고문헌]

### 1. 사료 및 자료집

- 『三國史記』 『三國遺事』 『三國史節要』
- 『隋書』 『唐會要』 『舊唐書』 『新唐書』 『冊府元龜』
-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Ⅲ』,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 2. 단행본

- 李基東,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 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 이문기, 『신라 하대 정치와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2015
- 井上秀雄, 『新羅史の基礎研究』, 1974, 東出版

### 3. 논문류

- 권덕영, 「신라 하대 朴氏勢力的 동향과 ‘朴氏 王家」 『韓國古代史研究』 49, 2008
- 權英五, 「新羅下代 왕위계승분쟁과 閔哀王」 『韓國古代史研究』 19, 2000
- 권영오, 「신라하대 왕위계승과 상대등」 『지역과 역사』 10, 2002
- 金東洙, 「新羅 憲德·興德王代の 改革政治-특히 興德王 九년에 頒布된 諸規定의 政治의 背景에 대하여-」 『韓國史研究』 39, 1982
- 김병곤, 「신라 헌덕왕대의 副君 秀宗의 정체성과 太子」 『東國史學』 55, 2013
- 金昌謙, 「新羅時代 太子制度의 性格」 『韓國上古史學報』 13, 1993
- 김창겸, 「신라 하대 왕실세력의 변천과 왕위계승」 『新羅文化』 22, 2003
- 金昌謙, 「신라 憲安王의 卽位와 그 治積」 『新羅文化』 26, 2005
- 김창겸, 「신라 승려 心地 연구-『삼국유사』 「心地繼祖」와 관련하여-」 『신라문화제 학술 발표논문집(신라 왕경유적과 고승이야기-『삼국유사』 「의해」 편Ⅱ)』 34, 2013
- 나희라, 「신라의 종묘제 수용과 그 내용」 『韓國史研究』 98, 1997
- 文暲鉉, 「神武王의 登極과 金昕」 『西巖趙恒來教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아세아문화사, 1992
- 徐禎穆, 「孝昭王의 출생 관련 기록의 검토」 『震檀學報』 122, 2014
- 선석열, 「신라 헌덕왕대의 정치과정과 정교부인의 혼인 문제」 『新羅文化』 48, 2016
- 손홍호, 「9세기 전반 신라의 정치동향과 충공의 역할」 『韓國古代史研究』 83, 2016
- 辛鍾遠, 「新羅五臺山事蹟과 聖德王의 卽位背景」 『崔永禧先生 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탐구당, 1987

- 윤경진, 「신라 興德王代 체제 정비와 金庾信 追封-三韓一統意識 출현의 일 배경-」 『史林』 52, 2015
- 尹炳喜, 「新羅 下代 均貞系의 王位繼承과 金陽」 『歷史學報』 96, 1982
- 李基東, 「新羅 興德王代의 政治와 社會」 『國史館論叢』 21, 1991
- 이재환, 「新羅 眞骨의 ‘家系 分枝化’에 대한 재검토-사위의 왕위계승권을 중심으로」 『大丘史學』 127, 2017
- 李泳鎬, 「통일신라시대의 王과 王妃」 『新羅史學報』 22, 2011
- 曹凡煥, 「新羅 下代 憲德王의 副君 설치와 그 정치적 의미」 『震檀學報』 110, 2010
- 曹凡煥, 「신라 중대 聖德王의 왕위 계승 再考-三國遺事 의 五臺山事蹟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43, 2015
- 朱甫墩, 「新羅 下代 金憲昌의 亂과 그 性格」 『韓國古代史研究』 51, 2008
- 蔡美夏, 「新羅 宗廟制의 受容과 그 意味」 『歷史學報』 176, 2002
- 최홍조, 「新羅 哀莊王代의 政治變動과 金彦昇」 『韓國古代史研究』 34, 2004
- 홍승우, 「문헌으로 본 新羅의 東宮과 그 운영」 『문헌으로 보는 신라의 왕경과 월성』,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7
- 홍승우, 「신라 副君과 月池宮」 『東洋學』 70, 2018